



## 대 구 지 방 법 원

### 판 결

사 건	2025가단110807 손해배상(지)
원 고	A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익
피 고	1.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C 2. D
변 론 종 결	2026. 5. 19.
판 결 선 고	2026. 6. 2.

### 주 문

1.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. 12. 28.부터 2026. 6. 2.까지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4/5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### 청 구 취 지



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. 12. 28.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## 이 유

### 1. 인정사실

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 제1 내지 8호증,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.

원고는 제품설계 등 프로그램인 E 프로그램(이하 '이 사건 프로그램'이라 한다)의 저작권자이다. 피고 주식회사 B(이하 '피고 회사'라 한다)는 골프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, 피고 D는 그 기술이사이다.

피고 D는 2022. 12. 28.경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피고 회사 노트북 2대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한 후 직원인 F, G에게 제공하였고, 위 직원들은 2022. 12. 28.경부터 2023. 7. 4.경까지 피고 회사의 골프채 도면 제작 등 업무에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.

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로 2024. 3. 26. 피고 회사는 벌금 500만 원, 피고 D와 F, G은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(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약 1395),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.

### 2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#### 가. 손해배상책임의 발생

1)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,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장비와 운용 프로그램에 관해 설



치, 교육, 유지·보수업무를 담당한 사실, 피고 회사는 피고 D와 H, G이 피고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, 피고 D는 피고 회사와 사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 D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고, 이는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했으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2) 피고 회사는, 피고 D의 행위를 확인·통제할 수 없었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 그러나 이 사건 프로그램이 피고 회사의 노트북에 설치되었고 피고 회사 직원들에 의하여 업무에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#### 나. 손해배상의 범위

##### 1) 원고의 주장

이 사건 프로그램의 정품가격이 사용료로서 수억 원에 이르므로,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인 1억 원(= 5,000만 원 × 2개)의 손해배상을 구한다.

##### 2)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적용 여부

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 등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.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(대법원 2013. 6. 27. 선고 2012다104137 판결 등 참조).



갑 제10 내지 13호증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, 즉 이 사건 프로그램은 설계(CAD), 가공(CAM), 해석(CAE) 기능을 포함하는데, 독립적인 단위 프로그램인 여러 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, 모듈 별로 가격이 정해져 있어 수요자로서는 필요로 하는 모듈에 대해서만 라이선스를 구입할 수 있는 점,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번들의 사용료가 4,000만 원에서 6,000만 원 정도이지만, 위 공급가액은 영구 사용을 전제로 하거나, 판매회사가 제공하는 무상하자 보수서비스, 기술지원 등의 용역대금을 포함한 것으로 보이는 점, 피고 회사는 2024. 9. 30. 주식회사 I로부터 J 소프트웨어를 600만 원에 구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았다면 사용대가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.

### 3)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액 인정

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(저작권법 제126조).

위 인정사실,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, 즉 이 사건 프로그램은 모듈별로 가격이 책정되어 판매되고 있고,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프로그램을 구입한다면 업무에 필요한 모듈만 구입하였을 것인 점,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번들의 사용료가 4,000만 원에서 6,000만 원 정도인데, 이는 영구적 사용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고, 피고들의 사용기간이 약 6개월인 점,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2개 노트북에 무단 설치한 사실로 벌금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, 원고의 손해액을



2,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.

#### 다. 소결론

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,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2. 12. 28.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. 6. 2.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「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」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#### 3. 결론

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판사            권민오